

제2593-1호
2018. 08. 27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 전화: 3396-4952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규 칙

제696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

- 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
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-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규 칙

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8년 8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96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제안의 모집 및 공고)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,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 계획을 홈페이지 및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3조(제안의 접수 등)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 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제안 제출자가 요구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4조(의견조회)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,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의 직·성명
3. 회의안건과 심의·의결내용

-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세부심사기준) 조례 제14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8조(채택등급의 결정)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창의성, 경제성, 효율성 및 주민 편익증진 기여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,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,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

-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부상)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10조(채택된 창안의 활용) 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.

- ② 채택된 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세부심사기준(제7조 관련)

구 분	평 가 항 목	점수
창 의 성	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인가?	25
경 제 성	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?	25
효 율 성	행정개선 효과가 있는가?	25
주민편익 증진 기여도	주민편익증진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?	25
최종평가점수	분야별 평가 점수 합산	100

[별표 2]

부상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(제9조 관련)

등 급	상 장	보 상 금
금 상	구청장 상장	100만원
은 상	구청장 상장	50만원
동 상	구청장 상장	30만원
장 려 상	구청장 상장	10만원

※ 사업년도 예산에 따라 보상금 및 등급 수상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.

[별지 제1호의서식]

제안 접수대장
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제 목	제 출 자		채택등급	부상금 지급액	비고
			성명	주소			

[별지 제2호의서식]

제안 접수증

접 수 번 호		접 수 일 자	
제 안 제 목			
성 명		주 소	
제안서의 보완사항			
위와 같이 귀하의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 담당자 (인)			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정이유

- 가.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고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민창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필요
- 나. 창안의 세부 심사기준 및 부상의 금액 기준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제안의 모집 및 공고(제1조~제2조)
- 연중수시 모집, 공모 제안 실시 근거 마련
- 나. 제안의 접수, 의견조회(제3조~제4조)
- 다. 위원장의 직무, 회의록(제5조~제6조)
- 라. 세부심사기준, 채택등급의 결정(제7조~제8조)
- 창의성·경제성·효율성 및 주민 편익증진 기여도 등(별표 1)
- 마. 부상, 채택된 창안의 활용(제9조~제10조)
- 금상 100만원, 은상 50만원, 동상 30만원, 장려상 10만원(별표 2)